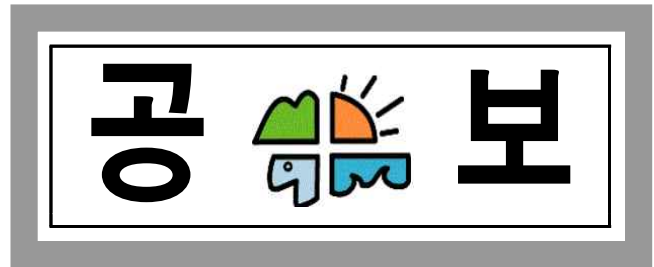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51호 2023년 3월 17일(금)

조 례

-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3
-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18

규 칙

-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22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24

공 고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6

입법예고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9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95호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마

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 복귀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996호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5. “민간주차장”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호인 종교시설의 주차장 및 토지소유자가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토지소유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주차장의 지정 및 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주차장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유주차장은 합계 5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별표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주차장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속초시의회 의원
3.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외부전문가
4.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관계 공무원 : 교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건축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속초시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관리주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차장명 (공동주택명)			동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세대수	
주차면수	면		공유 주차면수	면	
이용료 (*유료개방시)	시간당 원 (무료이용시간 : 최초 ~ 분까지)				
개방기간	~				
개방시간	①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② 토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③ 일요일 : 시부터 시까지				
	④ 공휴일 : 시부터 시까지				
특이사항					
지 원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속초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2. 공유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공유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97호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제17조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구조 설비기준)”을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을 적용하며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건축 관련 심의신청, 건

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시설물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차요금의 감면기준(제3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 나.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납세유공자 증명을 휴대한 차량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아.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다만, 1일 주차요금 및 월정 기간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차.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승용차 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자동차
 - 카.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 타.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 파.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이 경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반비다복카드(신분증 지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전기차충전시설을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에는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비고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된다.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2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 (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 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시설면적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3,000㎡미만 : 시설면적 150㎡당 1대 - 연면적 3,000㎡이상 : 시설면적 100㎡당 1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단, 종교집회장, 공연장, 소극장은 시설면적 100㎡당 1대 ○ 숙박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 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개수
5.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한다)	○ 공동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당 1.5대 이상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당 1.7대 이상 -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세대당 1대(세대당 전용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8대) 이상
6. 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 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어야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
8.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수련시설 및 발전시설 300㎡당 1대 ○ 공장시설 350㎡당 1대
9.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 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는 소숫점 이하를 1로 본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 구획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삭 제>
13. <삭 제>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98호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라 설치하는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금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경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규칙 제1546호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통·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동별의 총 및 동명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	248	1,219	
동명동	19	90	

별표 중 영랑동의 제3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명동의 제17통란 다음에 제 18통 및 제19통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13	일원	
동명동	제 18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1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2동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3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4동
동명동	제 19 통	제 1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5동
		제 2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6동 아파트내 상가
		제 3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7동
		제 4 반	동명동		속초롯데캐슬인더스카이	108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고시 제2023-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중이 시행하는 속초시 동명동 306-1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속초시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시 동명동 306-10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사업주체 및 대표자 : 교보자산신탁(주) 대표 조혁중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14층 (대치동, 삼성생명 대치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10번지 외 10필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민간분양	○ 대 지 면 적 : 4,361m ² ○ 건축연면적 : 9,578.073m ² ○ 주 용 도 : 공동주택 ○ 규 모 : 주1동, 지하2/지상20층 ○ 세 대 수 : 90세대 ○ 사 업 기 간 : 2021. 9. 24 ~ 2023. 10. 30.(예정)	30,326,000천원	

5. 주요 변경내역
 - 대지 면적 증감 없이 대지 형태 변경(토지 교환)
 - 토지조서(붙임)
6. 변경승인일 : 2023. 3. 10.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

※ 관계서류는 속초시 건축과(☎033-639-15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증감	
1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5-3번지	잡	301	301	-	
2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5-5번지	중	149	126	(▽)23	23m ² 제외
3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6-4번지	대	46	46	-	
4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6-5번지	대	139	139	-	
5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6-6번지	대	145	145	-	
6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79-5번지	대	165	165	-	
7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8번지	중	681	681	-	
8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10번지	대	1,344	1,344	-	
9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11번지	대	1,326	1,326	-	
1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06-22번지	대	65	65	-	
11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6-1번지	대	-	23	(△)23	23m ² 편입
합계	11필지		4,361	4,361	± 0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22년분) 처분한 건축물에 대하여 체납대상자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13. ~ 2023. 3. 28. (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위반대상(위치)	처분내용	반송주소	이행강제금(원)	송달불능사유
고*자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223,750	주소불명 등
심*향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223,750	주소불명 등
김*숙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1,223,750	주소불명 등
김*영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새마을8길 *	1,223,750	주소불명 등
홍*연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223,750	주소불명 등
박*식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223,750	주소불명 등
장*자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	1,223,750	주소불명 등
양*석	대포동 728-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223,750	주소불명 등
조*리	대포동 728-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642,050	주소불명 등
외** **계	대포동 728-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642,050	주소불명 등
이*자	대포동 728-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642,050	주소불명 등
김*자	대포동 728-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해오름로 ***-	1,642,050	주소불명 등
박*배	대포동 728-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 **, ***호	1,642,050	주소불명 등
김*부	노학동 980-78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로 **, *층	149,760	주소불명 등
김*임	대포동 72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 ***동 ****호	699,580	주소불명 등
김*임	대포동 727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 ***동 ****호	104,500	주소불명 등
이*자	청호동 915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 ***동 ***호	492,480	주소불명 등

성명	위반대상(위치)	처분내용	반송주소	이행강제금(원)	송달불능사유
이*자	청호동 921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 ***동 ***호	759,200	주소불명 등
김*화	청호동 586-1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양양군 물치천로 ***-*	6,695,500	주소불명 등
김*정	중앙동 474-38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167번길 *-*	556,600	주소불명 등
전*옥	교동 96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만천*길 **	55,410	주소불명 등
김*신	교동 826-1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6길 **-**, *층 ***호	1,093,820	주소불명 등
임*자	중앙동 468-24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22, ***동 ****호	2,069,980	주소불명 등
임*자	중앙동 468-24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청호로 22, ***동 ****호	244,780	주소불명 등
내** **계	대포동 178-77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대포해맞이1길 *-*	147,840	주소불명 등
전*경	대포동 421-30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	279,930	주소불명 등
박*권	대포동 421-29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길 ***-*	34,410	주소불명 등
김*서	교동 835-1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 ***동 ****호	27,632,960	주소불명 등
홍*명	영랑동 147-304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영랑해안6길 **	4,645,200	주소불명 등
신**관광 개*****	동명동 383-1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	4,775,230	주소불명 등
김*애	교동 690-14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	3,659,040	주소불명 등
홍*심	부영3단지 분산 상가동 107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62, 분***** ***호	251,200	주소불명 등
장*석	노학동 720-5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송군길 **-**	1,941,380	주소불명 등
김*영	중앙동 473-19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129번길 **-**	213,840	주소불명 등
조*숙	교동 1019-1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204번길 **, ***동 ***호	5,219,100	주소불명 등
박*숙	교동 987-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 ***호	3,530,010	주소불명 등
박*선	대포동 421-26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27번길 **, ***동 ***호	1,058,640	주소불명 등
최*석	노학동 1011-44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	214,890	주소불명 등
한*환	조양동 196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소평로 131	2,696,140	주소불명 등
임*규	조양동 609-3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강변나루로 **, ***동 ***호	697,680	주소불명 등
윤*학	중앙동 473-16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속초시 우령길 *, *동, ***호	666,260	주소불명 등
김*훈	교동 911-10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38길 ***-**, ***호	3,616,920	주소불명 등
김*호	청호동 1353-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채납에 따른 독촉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3길 **-**	2,816,190	주소불명 등

4. 공시송달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2022년분) 체납대상자에게 독촉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 기간 내에 속초시 건축과(☎639-247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 3. 13.

속 초 시 장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제한 폐지 규정을 반영하여 우수한 기량을 갖춘 단원을 채용하고,
- 나. 비상임단원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속초시립풍물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단원채용 시 속초시로 지역제한 규정 폐지 및 정년의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제6항)
- 단원의 자격을 속초시 거주자로 제한 한 지역제한 폐지
 - 제6항을 신설하여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을 만60세로 규정
- 나. 단장과 부단장의 업무수행 불가 시 악장이 직무를 대행함을 개정(안 제6조, 제2항)
- 단장이 미리 지정한 단원이라는 모호한 표현대신 시립풍물단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을 규정
- 다. 비상임단원의 수당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근거 개정(안 제14조, 제2항)
- 사회적 감염병, 개인의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6일 미만 공연에 참가 했을 경우 별표 5의 수당에서 일할 계산 근거 마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속초시립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신흥2길 16
속초시립박물관 학예팀
 - 연락처 : 전화(033-639-2976), 팩스(033-639-2430),
이메일(hkt7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립박물관 학예팀(033-639-297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장붙임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풍물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를 “자격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6조제2항 중 “단장이 미리 지정한 단원”을 “악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당만”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회적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6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상임단원 수당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수 당	비 고
악 장	1,000,000	1개월
수석단원	800,000	〃
단 무 장	600,000	〃
단 원	600,0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단원의 자격과 채용) ① 단원의 <u>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u>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한다. (생략) ② ~ ⑤(생략) <신설>	제4조(단원의 자격과 채용) ① 단원의 자격과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로 한다. (생략) ② ~ ⑤(현행과 같음) ⑥ 속초시립풍물단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u>단장이 미리 지정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③ ~ ④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악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수 등) ① (생략) ② 매월 토요일과 공휴일을 비롯하여 평일에 개최되는 일일테마	③ ~ ④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연에 6일 이상 참가하는 비상
임단원에게는 별표 5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
또는 사회적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6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